

장안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98(2014.10.01.)호로 변경 승인된 장안일반산업 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및 기장군(창조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24

부 산 광 역 시 장

I.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명칭 : 장안일반산업단지
-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
- 다. 면적 : 1,300,921.7m²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기정 : 기장군수, 부산도시공사 사장
- 변경 : 기장군수, 부산도시공사 사장, 남양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태식
- ※ 본 산업단지는 준공된 산업단지로 금회 변경행위에 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기정(부지조성 준공완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 2004 ~ 2011년

○ 변경(금회 변경행위에 한함)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 시행기간 : 변경 승인일 ~ 2016년 12월 31일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나.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유치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771,275.7	-	771,275.7	1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489,153.3	-	489,153.3	63.4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93,341.1	-	93,341.1	12.1	
전기장비 제조업(28)	42,599.0	-	42,599.0	5.5	
전기장비 제조업(2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80,066.3	감)22,985.2	57,081.1	7.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전기장비 제조업(2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66,116.0	증)22,985.2	89,101.2	11.6	

※ 변경사유 : 장안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남양금속 주식회사) 협력업체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300,921.7	-	1,300,921.7	100.0	-
산업시설용지	771,275.7	-	771,275.7	59.3	-
지원시설용지	44,341.2	-	44,341.2	3.4	-
공공시설용지	485,304.8	-	485,304.8	37.3	-
도로	210,028.8	-	210,028.8	16.1	-
주차장	8,719.5	-	8,719.5	0.7	-
공원	178,386.5	-	178,386.5	13.7	-
녹지	65,258.7	-	65,258.7	5.0	-
저류시설	22,911.3	-	22,911.3	1.8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다. 공공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와 기장군(창조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II.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기정 : 기장군수, 부산도시공사 사장

○ 변경 : 기장군수, 부산도시공사 사장, 남양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태식

※ 본 산업단지는 준공된 산업단지로 금회 변경행위에 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5. 사업 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 기정(부지조성 준공완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 2004 ~ 2011년

○ 변경(금회 변경행위에 한함)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 시행기간 : 변경 승인일 ~ 2016년 12월 31일

6.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변경부분에 한함)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위치	비고
기정	C2	2	1	22,985.2	반룡리 837장 일원	
변경	A2	2	1	12,196.0	반룡리 837장 일원	유치업종 변경 및 획지분할
			2	3,634.5	반룡리 837장 일원	
			3	3,588.0	반룡리 837장 일원	
			4	3,566.7	반룡리 837장 일원	

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변경부분에 한함)

구분	도면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C	2-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350%이하	-
			높이	• 5층이하	-
변경	A	2-1~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350%이하	-
			높이	• 5층이하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변경부분에 한함)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26~27 (신설)	A2	차량출입불허구간 (26-교차로에서 7m, 7m, 27-교차로에서 9m, 9m)	중로2-13호선과 중로2-14호선, 중로2-14호선과 중로2-15호선 교차로

※ 변경사유 : 장안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남양금속 주식회사) 협력업체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변경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기장군(창조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